

# Tax News Flash

## 한국-홍콩 조세조약 정식 서명



August 5, 2014

2014년 7월 8일 홍콩의 재경사무·재무국 국장인 K C Chan과 주홍콩총영사인 조용천은 2013년 9월 가서명 되었던 한-홍콩 조세조약에 정식으로 서명하였으며, 이로서 동 조세조약은 양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동 조세조약은 양국의 과세권을 명확히 기술하고, 상대국에 사업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외 경제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세무위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및 세무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발효 일자

한국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은 2015년 4월 1일, 그 외의 과세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홍콩의 경우 모든 세제에 대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대상 조세

동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한국의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이며, 홍콩의 조세는 이윤세(profit tax), 급여세(salary tax) 및 재산세(property tax)가 해당됨.

### 거주자의 정의

동 조세조약상 거주자는 한국의 경우 한국 법률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타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개인 이외의 인이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됨

### 투자소득(소극적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한국 내 홍콩 측 투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향후 홍콩기업들의 한국 투자 및 진출 기회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동 조세조약 시행 전후 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조세조약 시행 전(*) (법인세법 제 98 조)	조세조약 시행 후 (한-홍콩 조세조약)
배당	20%	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지분 최소 25% 이상을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10%, 그 이외의 경우 15%
이자	20%	10% (다만, 한국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정부에서 지분을 보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면제)
사용료	20%	10% (영화필름, 방송용 필름 등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 사용,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의 사용 등)

(\*) 조세조약 시행 전에는 실제 원천징수 시 상기 원천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징수됨

### 고정사업장 및 사업소득

한-홍콩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규정에는 계약체결 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Agent PE)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에 따른 간주고정사업장(서비스 PE)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한국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간주고정사업장<sup>1</sup>에 관한 조항이

조세조약과 양립되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조세조약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은 국내 세법의

-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 개월 중 총 6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 개월 중 총 6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 년 이상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sup>1</sup> 법인세법 제 94 조 제 2 항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의제될 수 있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6 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한-홍콩 조세조약에서는 12 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현장, 건설, 조립 또는 설치 공사장이나 그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포함함. 따라서, 동 조세조약 체결 이전에는 6 개월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건축 장소를 보유하거나 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홍콩기업은 고정사업장이 성립되어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나, 조세조약 체결 후에는 이러한 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음.

또한, 동 규정은 한국이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6 개월의 기준보다 유리하게 체결되어 한국에서 건축 활동을 하고자 하는 홍콩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양도 소득

한국 법인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취하는 한국법인의 주식의 양도소득은 수입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으로 과세됨. 그러나, 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에서는 부동산 주식(부동산 등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주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이 인정되는 반면, 그 외의 일반 주식에 대한 거주지국의 배타적 과세권을 인정하여 비거주자의 일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금번 체결된 한-홍콩 조세조약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포괄적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취득한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이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됨. 따라서 홍콩거주자가 한국에서 취득한 주식 양도소득 및 한국거주자가 홍콩에서 취득한 주식 양도소득은 각각 한국 및 홍콩에서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용료 소득

한국-홍콩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범위에는 영화필름, 음향 또는 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테이프 등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사용, 사용권 또는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수익은 동 사용료의 범주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경우,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임대소득이 기업의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수취되는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분류될 것으로 보임.

### 정보교환 규정

양 체약국의 관할 당국은 조세조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약상 규정 수행 또는 양 체약국에서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요청한 정보가 다른 쪽 체약국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여야 함. 단, 동 과정을 통해 취득된 정보는 의도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제 3 국에게 제공될 수 없음.

또한,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이와 같은 폭넓은 조세정보 공유 및 금융기관 보유 정보의 교환까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 탈세혐의자에 대한 폭넓은 과세자료 확보 및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가 어느 정도 방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Contacts

국제조세	내국세	이전가격 및 국제통상	금융세무
주정일	오연관	이희태	윤인희
709-0722	709-0342	3781-9083	709-0542
jjjoo@samil.com	ygoh@samil.com	htlee@samil.com	ihyun@samil.com
이상도	박승선	헨리안	전한준
709-0288	709-0621	3781-2594	3781-3489
sdlee@samil.com	sspark@samil.com	henryan@samil.com	hjchon@samil.com
김성영	황철진	전원엽	글로벌 서비스
709-4752	709-0759	3781-2599	이중현
sykim@samil.com	hcj@samil.com	wychon@samil.com	709-0598
		조정환	alexlee@samil.com
김상운	정찬우	709-8895	
709-0789	709-0692	jwhancho@samil.com	김주덕
swkim@samil.com	cwchung@samil.com		709-0707
		해외파견세무	michaelkim@samil.com
이동복	이영신	정연성	
709-4768	709-4756	709-0538	삼일조세정책연구소
dongblee@samil.com	yslee@samil.com	yschung@samil.com	송상근
			709-0559
신현창	정민수	상속증여 및 주식변동	sksong@samil.com
709-7904	709-0638	이현종	
hcshin@samil.com	minsung@samil.com	709-6459	
		hyunjonglee@samil.com	
조세/불복	김진호		
조남복	709-0661		
709-0501	jhokim@samil.com		
njo@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